

배포 일시	2023. 3. 24.(금)		
담당 부서	건설정책관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 우정훈 (044-201-3538)
		담당자	팀 장 흥 철 (044-201-4990)
			사무관 김병철 (044-201-3521)
보도일시	3.24.(금) 11:00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.		

타워크레인 태업 등 의심사례에 대한 심의·처분절차 착수 예정

- 국토부, 불법·부당행위 특별점검 중간발표·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등 35건 적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최근 고용노동부, 경찰청, 지자체 등과 함께 범부처합동으로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, 현재 까지(3.15~22일)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, 부당금품 요구 2건 등 총 35건의 불법·부당행위 의심사례가 조사되었다고 밝혔다.
 - 전국의 오피스텔, 공동주택 등 약 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의 작업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, 불법·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계획이다.
- 지난 14일, 원희룡 장관은 특별점검팀과 함께 서울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에 따른 공사차질 등 피해현황을 점검 하였으며,
 - 불법·부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 구축, 운행기록장치 설치 방안 추진 등 관련 협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.
- 부처합동 점검단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성실의무 위반행위 유형 15개를 기준으로 자격기준 위반사항 발생 여부와 이에 따른 공사 차질에 따른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,

- 현재까지 점검한 현장 수는 164개로, 협회 등 유관단체를 통해 확인된 피해현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.
- 현재까지 확인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는 33건이며 주요 유형으로는 △정당한 작업지시 거부, △고의적인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및 기계 고장 유발, △근무시간 미준수 등이라고 밝혔다.
- 이와 함께, 건설현장 2곳에서 부당금품 요구 정황이 확인되어 추가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불법·부당 행위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필요 시 경찰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.

< 특별점검 점검 결과(3.15~22) >

권역 (지방국토관리청)	점검		성실의무 위반		금품요구 등	
	현장수	조사건수	현장수	적발건수	현장수	적발건수
소계	164	580(585)	9	33(33)	2	2
서울청	59	277(281)	5	23(23)	2	2
원주청	10	25(25)	1	1(1)	-	-
대전청	13	41(41)	1	5(5)	-	-
익산청	16	28(28)	-	-	-	-
부산청	66	209(210)	2	4(4)	-	-

성실의무 위반 사례 : ○○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작업계획서에 있는 거푸집 인양을 **정당한 사유없이 거부**하여 공사차질 발생, 현장은 기중기 등 대체 건설기계를 통해 작업 수행

금품수수 요구 사례 : △△현장에서 **인양작업 1회당 40만원의 금품을** 간접적으로 요구

- 국토교통부는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불법·부당행위 외에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행위 대응센터에 접수된 부당금품 요구, 채용강요 등 28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.
- 원희룡 장관은 “남은 점검 기간에도 면밀히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살펴 보고, 확인된 불법·부당행위는 속도감있게 처분 절차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” 이라고 강조하면서,

- “공사차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별점검 과정에서 유관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” 고 말했다.

